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996. 2. 27.

교육사회위원회

1.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2.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6년 2월 14일

○ 회부일자 : 1996년 2월 14일

3. 제 안 이 유

'95. 1. 1부E 청주시에 구가 설치되어 관할구역이 정해짐에 따라 공동실습소 설치학교의 위치를 개정하려는 것임

4. 주 요 골 자

충청북도농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의 청주농업고등학교 위치란중 "청주시"를 "청주시 상당구"로 하고, 충청북도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의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위치란중 "청주시"를 "청주시 상당구"로, 충북상업고등학교 위치란중 "청주시"를 청주시 흥덕구"로 변경함

5. 검토 보고

충청북도실업거 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본 조례안은

청주시 구설치계 관한 조례 (청주시 조례 제1,795호, 1994. 12. 30)가 제정되었고 '95. 1. 1부터 청주시에 구가 설치되어 관할구역이 정해짐에 따라 공동실습소 설치학교의 위치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6. 개정 조례안 : 별 첨